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8231/2 / 전송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2층) 담당 이 황

문서번호 주재 58531-1015

시행일자 1998. 4.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서울특별시
보존		
주택 국장	전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주택재개발과장		
재개발계획계장		재개발1계장 재개발2계장
기안	이 황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주택재개발사업의 규모별 건설의무 비율을 개선하여 소형평형 미분양에 따른 조합(시공사)의 자금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마련하여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게재지 : 서울시보
- 나. 게재내용 : 공고안(별첨)
- 다. 게재일자 : '98. 4.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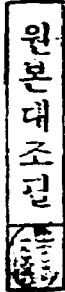
( 제2안 )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공고문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에 대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안 1부. 끝.



## 주 택 재 개 발 과 장

( 제3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  
조례개정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귀국(주무과에서 의견 수합)의 의견을 '98. 5.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서국·실1-16, 주택기획과, 건축지도과,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서구1-25(재개발관련과), 서본부 1-3.

( 제4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  
사업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귀 공사(협회)의 의견을 '98.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  
습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1부.



##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 제5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1부.

## 서울특별시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의회(도시정비위원회).

( 제6안 )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끝.



## 주택재개발과장

( 제7안 )

수신 홍보담당관

제목 컴퓨터 게시판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광고안에 대하여  
컴퓨터 게시판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광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끝.

주 택 재 개 발 과 장



# 공 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233호

공고심사	1998. 4. 21	제 233호
담당자	도시계획사업부	
장	[Handwritten Signature]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코자 주택재개발 규모별 건립비율을 조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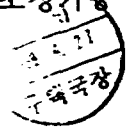
가. 주택재개발시 공동주택 규모별 건설 의무 비율 조정

(1)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 80%이상

(2) 전용면적 60㎡이하 규모 : 40%이상

※현행 : 50%이상

(3) 주택재개발 규모별 건설 의무 비율을 총건설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8.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참조 : 주택재개발과장, 전화 : 3707-82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나.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와 각 구청 주택재개발업무 소관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